



지방재정분야 주요 질의·회신 [I]

- 2010년 상반기 -

조현혜

행정안전부

※ 본 질의회신 사례는 2010년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질의회신을 종합한 것으로서
2회에 걸쳐 게재하는 것임

1. 보증채무부담행위 내용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

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하고,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 그리고, 이러한 보증채무에 대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해당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정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성립한 보증채무의 동일성을 침해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증채무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어 원래의 보증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게 되는 정도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대출금리 인상이나 대출금액 증가 등은 주채무의 확대를 가져오는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증가된 부분만큼의 신규보증행위와 같게 되므로, 이는 당연히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반면,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금액 축소 등의 주채무의 축소를 가져오는 행위의 경우 「지방재정법」이 주채무의 축소와 보증채무의 관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여 채권자가 본래 받아야 할 급부와 동일한 급부를 받게 하는 것이 보증채무의 내용이므로 주채무의 범위가 축소되면 보증채무의 범위도 축소된 주채무의 범위만큼 당연히 축소된다 고 볼 것이고(「민법」 제430조 유추해석), 이는 당초 부담하기로 한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금액 축소 등 주채무의 축소를 가져오는 행위가 있어도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집행상의 문제일 뿐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행정내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미 지방의회가 의결로 일정한 금액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수권을 한 것으로 이 경우 충분히 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별도의 추가 의결과 같은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179 (2010.01.11)】

2. 공연예술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 및 보조 가능여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재)○○시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 이와 별도로 ○○국제공연예술제, ○○국제음악제 등을 전담하여 개최하기 위한 (재)○○공연예술재단을 조례로 설립하고 기본재산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보조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질의하신 재단법인의 설립 가능 여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재단법인과의 관계 등 법령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재단법인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행사·축제성 경비는 증복·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정책과-230 (2010.01.13)】

3. 도시개발사업 위탁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Q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12조에 의하여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기반시설사업을 위탁받아 토지 등 매수·보상업무 및 도로 공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공공시설 손실부담,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은 예외적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귀 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제83조제2항은 위탁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세입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위탁금을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할 것인지 세입세출 외로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위 지방재정법령 및 위탁금의 경비 성격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시설 건설사업 등을 위탁받아 자치단체가 당해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이관 받아 당해 자치단체의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탁금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세입세출 외 현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259 (2010.01.15)】

4.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정산 필요 여부



- 「○○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단에 구의 문화예술사업 중 11개 사업을 이관하고 출연금을 교부한 경우,
 - 「○○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각 사업별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위 재단 설립 조례에 따라 사업연도별 결산서만을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법령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행하는 것으로.
 - 특정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한 사업성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과는 달리 그 집행에 대하여 반드시 정산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동 재단 설립조례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매사업연도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산 요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동 재단 출연금이 재단의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보조금에 준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문화재단에 지원한 경비의 정산여부는 자치단체 예산상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 경우라도 당해 경비의 구체적인 지원 목적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259 (2010.01.15)】

5. 지방채 발행 및 사용에 관한 질의

(Q) 질의내용 1

- 자치단체가 지방의회가 심의·의결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 회신내용 1

- 현행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심의·의결한 지방채 발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현행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이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지방의회에서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확정하였다면 자치단체는 그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질의내용 2

- 2009년 한시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분 지방채 발행액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SOC 분야인 스포츠센터 건립분과 합하여 전액 스포츠센터 건립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A) 회신내용 2

-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분 지방채 발행액은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으로서 그 용도가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2009년 한시적으로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경상적 지출 및 인건비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009. 4. 1 공문통보)



- 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분 지방채 발행액을 포함하여 전액 스포츠센터 건립 등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질의내용 3

-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분 지방채 발행액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지방의회가 예산의 심의 ·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의회에 사용내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A) 회신내용 3

-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분 지방채 발행액을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에 사용내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Q) 질의내용 4

- 지방의회가 지방채 발행계획에서 세부사업을 정하여 심의 ·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A) 회신내용 4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심의 · 의결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 · 의결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으며,
 - 예산의 집행은 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심의 · 의결한 예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정정책과-589 (2010.02.01)】

6. 존속기간이 없는 기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금 존속기간이 없는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기금의 존속 기간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일몰제를 통해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기금조례 제정(안)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기금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안)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수정 발의 등을 통해 지방기금법에 규정한 기금 존속기한을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재정정책과-611 (2010.02.02)】

7. 특별회계 폐지 시 체납액 및 기한 미도래 융자금의 세입조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경우,
 - 체납액 및 미도래 융자금 징수시 특별회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세외수입 계좌로 불입하여도 되는지?
 - 특별회계 계좌를 해지하고 고지서에 의해서만 세외수입 계좌로 불입하여야 하는지?



- 귀구에서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



1항 규정'에 부과 및 상환중에 있는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특별회계 계좌를 해지하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특별회계 계좌를 해지하고 고지서에 의거 세외수입계좌로 불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부칙 제3조제1항 위배).

【재정정책과-892 (2010.02.17)】

8. 통·리장에 대한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가능 여부



- 지역신문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통·리장에게 지역신문 구독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또는, 통·리장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통·리장은 일반 자연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2조의2 제5항과 동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조례로 임명되는 행정상 하부조직입니다.

– 따라서 자치단체가 필요시 보조를 할수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공공기관' *에 해당되지 않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공공기관 정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 또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이 가능한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리장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과-934 (2010.02.19)】

9. 컨벤션센터 공사대금과 토지매각 수입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개발사업자”)는 「경제자역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 △△와 동 개발사업 중 1차 컨벤션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A부지를 인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개발사업자 소유 부지에 2차 컨벤션센터 등을 건축하기로 △△시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경우, △△시가 토지 매각으로 인한 매각수입과 2차 컨벤션센터 건축에 따라 지급하게 될 공사 대금을 상계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하며, 그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법 시행령 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채무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당해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 대하여 상계 또는 충당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 △△시의 토지매각에 따른 채권과 시설공사에 따른 대금지급 채무의 확정, 지급기한 도래 등 실질적인 채권·채무가 성립하고, 상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 상기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토지매각으로 발생한 수입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966 (2010.02.23)】



1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투·융자 심사



-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적정부지를 찾게 되어, 이를 토지매입 신규사업에 대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 하반기 수립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에 의거 투·융자심사 의뢰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 상기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 함은 국가 정책사업의 계획변경 또는 연도 말 등에 긴급하게 결정된 사업,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업 등을 뜻하며,
 - 귀 기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정책과-1036 (2010.03.01)】

11. 계속비 사업 예산의 변경



- 자치단체가 시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추진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으로 총액 180억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은 경우,
- 공사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5%로 낙찰되어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다면, 2010년도 예산편성시 의회가 예산액을 낙찰차액만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42조는 자치단체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 동법 제50조 제4항은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 의결된 계속비사업의 각 연도별 금액은 지방의회의 심사 ·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 예산에 당연히 편성되므로 계속비의 당해연도 예산 편성액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삭감 조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계속비사업의 현저한 변경 등 예산을 조정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과-1057 (2010.03.02)】

12.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의 전출 가능여부

(Q) 질의내용

-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일반 회계 전출 가능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 세출로서 일반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주차장법」 제22조 및 제32조 제7항은 주차요금과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 ·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1067 (2010.03.03)】

13. 자치단체 통합 시 금고 지정방식 및 금고은행의 지정 권한



-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인정이 현재 3개시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시 금고의 약정승계를 통해 통합시 금고로 인정되는지 여부
- 통합전 3개 시장이 통합시장의 권한인 통합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3개시의 금고약정을 모두 해지하고 통합시 금고를 재지정하는 방식과, 현행 3개시 금고를 통합시 금고로 인정하여 약정을 승계하되 취급회계 등에 대하여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단,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 회계에 대한 복수금고 지정은 불가

- 통합시의 금고 지정 방식은 통합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통합시 금고은행 지정은 통합 시장의 권한이므로, 기존 3개시의 시장이 통합시의 금고은행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재정정책과-1102 (2010.03.05)】

14.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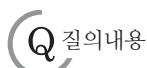
-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절차



- 지방채 발행 한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 등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 다만, 상환기간의 연장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1135 (2010.03.06)】

15. 지역주민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여부



- 도시가스사업법령에 의하여 가스사용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경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동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 i)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ii)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iii)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iv)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 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위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등을 검토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취지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일지라도, 다른 지역 거주 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1306 (2010.03.16)】

16. 예비비로 해양오염사고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가능 여부



- △△군 도서 일원에 2차에 걸친 유류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도서지역 주민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동 지역주민에 대하여 민간인재해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주민 개인에 대하여 보상금 등 공금의 지출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에 대하여 보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 해양유류오염 피해에 관한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재난복구 등 지원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사고의 예측가능성 및 지출의 불가피성 등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 당해 자치단체가 검토한 후 지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1319 (2010.03.17)】

17. 정기예금 예치기간 만료 이후 이율 계속 적용 가능여부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예치기간 중 적용하던 정기예금의 이율을 만기 경과 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부에서 규정한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자치단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정기예금의 이율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와 금고은행 간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은 약정계약서를 토대로 해당 금고은행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재정정책과-1544 (2010.03.29)】

18. 국립공원 관광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지급 및 주차장 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가능 여부

△△국립공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관광객이 원격지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 불편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으로서,

- □ □ 시는 지역가맹점에 한하여 사용되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주차장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구입하게 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 주차장 사업자의 손실은 □ □ 시가 보상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 추진



- 주차장 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Q) 질의내용 2

- 주차장 사업자가 관광객에게 □□시가 발행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내용 1

- 주차장 사업자로 하여금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따라서, 주차장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상 위임 없이 상품권 구입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은 위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며, 주차장 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전제 조건인 상품권 구입 의무가 허용되지 않는 한, 주차장 사업자에 대하여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 및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보상금 등 공금의 지출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주차장 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동 법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A) 회신내용 2

-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장의 상품권 발행 및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그 유통범위가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가맹점에 제한되며, 유통기간도 당해 회계연도 내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위 질의 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시가 “보상금”의 형태로 주차장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규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 관광 진흥 및 민원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급 등 법령상 가능한 다른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정책과-1849 (2010.04.09)】

19. 주민자치센터 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 가능 여부



- 주민자치센터의 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별도 지급 여부 및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지침이 있는지 여부



- 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서 시·군·구 단위 주민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이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조례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의 지원은 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별도의 법령 등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기관임을 고려하면,
 -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의 문화·복지·편익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과-1956 (2010.04.15)】

20. 민간경상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한 것이 목적 외 사용인지 여부



- △△군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일본 홈스테이 사업을 10년 동안 지



원하여 왔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상 국제교류 추진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일본과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으로 계상한 바 있으나,

- △△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결정되었다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세출예산의 목적은 각 사업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 및 당해 예산내역으로 산출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보조사업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상 △△군 국제교류사업 중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일본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지원 경비로 부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실제 구체적인 세부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근거한 당해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여 교부신청을 받아 심사 및 교부결정이 확정 되는 것으로,
 - 세부 사업내용이 당해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되도록 결정되었다면, 단지 종전에 추진하여 온 사업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목적 외 사용인지 여부는 당초 의결된 사업의 내용이 청소년에 한정된 사업으로서 일반인의 참여는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취지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2121 (2010.04.23)】

21. 군부대 CCTV 설치 경비 지원 가능 여부

(Q) 질의내용

- 「통합방위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시 · 도지사는 취약지역(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도

록 규정하고,

- 동 법 시행령 제36조는 그러한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으로서,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 이에, △△△지역 밀입국 어선감시와 적 침투에 대비하여 취약지역 3개소에 군부대가 운용하기 위한 주·야간 고성능 감시장비(CCTV)가 위 규정상의 장애물 설치 등에 해당되어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서 외교, 국방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적 침투 등의 감시활동을 위한 군부대 장비의 설치·운용은 원칙적으로 국방과 관련된 사무로 판단되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 상,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은
 -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의 근거 없이는 경비를 지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율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취약지역의 장애물로서 군부대 주·야간 고성능 감시장비(CCTV)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법령 상 장애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령 소관부처인 국방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정책과-2540 (2010.05.19)】



22. 지방자치단체 재정 통합시 기금의 복수금고 운영 가능 여부



- 기금의 경우 통합의 특수성 및 운영상 문제점이 일반회계와는 다르므로 복수금고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및 「재정통합운영 매뉴얼」에 따라 일반회계는 1금고를,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는 1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와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 금고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위회계별로 금고가 달라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단위회계 내에서 비율을 나누어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